

예 산 총 칙

202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2,124,416,552 | 63,732,497 |
| 일반회계 | 1,747,679,889 | 52,430,397 |
| 특별회계 | 376,736,663 | 11,302,10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286,964,957 | 8,608,949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02,381,795 | 3,071,454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184,583,162 | 5,537,495 |
| 기타특별회계 | 89,771,706 | 2,693,151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241 | 7 |
|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| 6,813,677 | 204,410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| 89,760 | 2,693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426,344 | 12,79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13,992,337 | 419,770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83,422 | 2,503 |
|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| 36,878 | 1,106 |
| 지하수특별회계 | 980,950 | 29,429 |
|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| 45,405,444 | 1,362,163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| 21,426,980 | 642,809 |
|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| 515,673 | 15,47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9,900,000천원으로 한다.